|  |  |  |
| --- | --- | --- |
| **외국국적 고급인력에게 중국 비자 및 거주에 편의를 주는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인사부발[2012]57호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단 당위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외사처(外办), 공안청(국), 외국전문가국, 당 중앙 국무원 각 부문의 인사부문: 현행 출입국 관리 법률법규 및 《〈해외도입 고급인력의 특정 생활혜택에 관한 약간의 규정〉의 통지》(조통자[2008]58호)등 문건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 고급인력의 중국 비자 및 거주 관련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하는 바이다. 1. 비자 및 거주편의 제공 대상 아래의 해외 고급 인력의 수급계획에 포함되어 중국에 유입된 외국 고급인력 및 그 외국국적 배우자, 18세 미만 외국국적 자녀, 또는 중국국적이며 중국으로 귀국한 고급인력의 외국국적 배우자와 18세 미만 외국국적 자녀는 비자 및 거주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중앙 해외 고급인력 도입계획(“천인계획(千人计划)”)(2)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문 위원회, 각 직속기구, 중앙기업이 전개하고 중공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또는 국가외국전문가국에 보고하여 비안 동의받은 각 유형의 해외 고급인력 도입계획 (3)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부(副)성급 도시가 전개하고 중공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또는 국가외국전문가국에 보고하여 비안 동의받은 각 유형의 해외 고급인력 도입계획 (4) 성급 이하가 전개하고 규모가 비교적 크며, 등급이 높고, 영향력이 크며. 각 성(자치구, 직할시)와 부성급 도시 당위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또는 외국 전문가 주관부문이 심사비준하여 중공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또는 국가외국전문가국에 보고하여 비안 동의받은 각 유형의 해외 고급인력 도입계획 2. 비자 및 거주편의 제공조치 (1) 여러 차례의 임시 입출국이 필요한 경우, 5년간 다 회에 걸쳐 유효하고 매 회 체류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장기 멀티비자를 처리할 수 있다. (2) 중국 내에서 일을 하거나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경우, 업무비자 또는 2년~5년간 유효한 외국인 거주(居留)증서를 처리할 수 있다. (3) 영구적인 거주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구 거주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4)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국 정착 전문가증 또는 외국 전문가증을 발급한다. 3, 비자 및 거주편의 처리사항의 절차 (1) 중앙과 국가기관의 각 부문위원회, 직속기구, 중앙기업이 본 통지 제1조, 제1, 2관에 따라 도입한 고급인력 및 그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비자 또는 장기거주 수속을 처리한다. 고급 유학인력은 유관 부문위원회, 직속기구, 중앙기업 조직인사부문이 《고급 유학인력 등기표》와 《고급유학인력 명단》을 작성하여 관련 증명자료와 함께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전문기술인원 관리사에 제출한다. 고급 외국전문가는 유관 부문위원회, 직속기구, 중앙기업 인력도입 귀속관리 부문은 《고급 외국전문가 등기표》와 《고급 외국전문가 명단》을 작성하여 관련 증명자료와 함께 국가 외국전문가국 사무실에 제출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문기술인원관리사 또는 국가 외국전문가국 사무실이 심사결정한 후, 명단을 외교부 영사사(领事司) 또는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에 우편송부하고, 외교부 영사사 또는 공안부 출입국 관리국이 유관 주외대사관 또는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문에 통지한다. 각자 직능에 따라 관련 인원이 장기 멀티비자, 업무비자 또는 2년~5년 외국인 거주허가를 심사발급 받도록 한다. (2)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통지의 제1조 제3, 4관에 따라 도입된 고급인력 및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의 비자 또는 장기 거주수속을 처리하고, 고용단위가 등기표와 명단을 작성하여 관련 증명자료와 함께 성급 인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또는 외국 전문가 주관부문에 제출한다. 성급 입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또는 외국 전문가 주관부문이 심사결정한 후, 명단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외사판공실 또는 공안기구 출입국 관리부문에 우편송부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외사 판공실은 명단을 외교부 영사사에 우편송부한다. 주외 대/공/영사관은 외교부 영사사의 통지에 근거하고,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문은 성급 인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또는 외국 전문가 주관부문의 공문에 근거하여 각자 직능에 따라 관련인원이 장기 멀티비자, 업무비자 또는 2년~5년 외국인 거주허가를 심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본 통지 제1조 제1, 2, 3, 4관에 포함되는 고급인력 및 그 배우자와 18세 미만 미혼자녀 본인이 영구 거주수속 처리에 대한 의향이 있고 관련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력도입계획 집행부문 또는 지방이 등기표와 명단을 작성하여 관련 증명문건과 함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전문기술인원관리사에 제출하여 심사결정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정기적으로 공안부에 명단을 제공한다. 공안부는 유관 지방 공안부문에 명단 중 관련인원의 <<외국인 영구 거주증>>심사발급에 대해 통지한다. 명단 중 확정된 외국국적 고급인력은 여권 복사본만을 제공하고 장려증명, 과학연구 성과증명 등 증명자료와 건강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본 통지 제1조 제1, 2, 3관에 포함된 고급인력의 외국국적 배우자는 혼인증명, 건강증명, 국외 무범죄기록의 본인 서면 성명(声明) 및 여권사본을 제출한다. 18세 미만 미혼 외국국적 자녀는 가족관계증명 및 여권사본을 제출한다. 본 통지 제1조 제4관의 고급인력의 외국국적 배우자는 혼인증명, 건강증명, 국외 무범죄기록 증명 및 여권 사본을 제출하고, 18세 미만 미혼 외국국적 자녀는 가족관계증명 및 여권 사본을 제출한다. (4)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국적 고급인력이 중국 정착전문가증 또는 외국전문가증의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 중앙과 국가기관 부문위원회, 직속기구, 중앙기업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 또는 외국 전문가 주관부문이 명단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또는 외국전문가국에 보고하여 심사비준 동의를 거친 후 증서를 발급하여 관련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4. 기타사항중점 인력도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고급인력 및 그 가족자녀의 비자와 거주수속은 계속하여 《해외 고급 유학인력 귀국업무 녹색통로 관련 출입국 및 거주편의 문제에 관한 통지》(인사부발[2009]113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집행한다. 각 급 “천인계획” 서비스 창구는 적극적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장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국적 인력에 포함되어 있는 각 유형의 해외 고급 인력에게 맞춤형, 원스톱, 전방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외국 고급인력에게 중국업무 비자 및 거주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해외 고급인력 도입의 강도를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각 급 조직, 인력자원사회보장, 외교, 공안, 외국전문(外专) 부문은 이러한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협력강화, 완벽한 서비스를 통해 소강사회(小康社会, 역주: 중진국 수준의 사회·경제 상황)와 혁신형 국가건설에 도움이 되는 인력수급을 보장한다. 중공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공안부 국가외국전문가국 2012년9월28일 |  | **关于为外籍高层次人才来华提供签证及居留便利有关问题的****通知**人社部发〔2012〕57号 各省、自治区、直辖市、新疆生产建设兵团党委组织部、人力资源社会保障厅（局）、外办、公安厅（局）、外国专家局，党中央国务院各部门人事部门： 根据现行出入境管理法律法规及《关于印发〈关于海外高层次引进人才享受特定生活待遇的若干规定〉的通知》（组通字〔2008〕58号）等文件规定，现就外籍高层次人才来华签证及居留有关问题通知如下： 一、提供签证及居留便利的对象 凡纳入下列海外高层次人才引进计划引进的外籍来华高层次人才及其外籍配偶和未满18周岁外籍子女，或中国籍回国高层次人才的外籍配偶和未满18周岁外籍子女，可以为其提供签证及居留便利。 （一）中央海外高层次人才引进计划（“千人计划”）；（二）中央和国家机关各部委、各直属机构、中央企业开展并报中共中央组织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或国家外国专家局备案同意的各类海外高层次人才引进计划；（三）各省、自治区、直辖市和副省级城市开展并报中共中央组织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或国家外国专家局备案同意的各类海外高层次人才引进计划；（四）省级以下开展的规模较大、层次较高、具有较强影响力，经各省（自治区、直辖市）和副省级城市党委组织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或外国专家主管部门审核，报中共中央组织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或国家外国专家局审批同意的各类海外高层次人才引进计划。 二、提供签证及居留便利的措施 （一）需多次临时入、出境的，可办理5年多次有效、每次停留不超过180天的长期多次签证。 （二）需在中国工作或长期居留的，可办理工作签证或2至5年有效的外国人居留证件。 （三）符合办理永久居留条件的，可申请办理永久居留手续。 （四）符合条件的，颁发来华定居专家证或外国专家证。 三、办理签证及居留便利事宜的程序 （一）中央和国家机关各部委、直属机构、中央企业按照本通知第一条第一、二款引进的高层次人才及其配偶和未满18周岁子女，按以下程序办理签证或长期居留手续：高层次留学人才由相关部委、直属机构、中央企业组织人事部门填写《高层次留学人才登记表》和《高层次留学人才名单》，与相关证明材料一并报送人力资源社会保障部专业技术人员管理司；高层次外国专家由相关部委、直属机构、中央企业引智归口管理部门填写《高层次外国专家登记表》和《高层次外国专家名单》，与相关证明材料一并报送国家外国专家局办公室。人力资源社会保障部专业技术人员管理司或国家外国专家局办公室审核后，将名单函告外交部领事司或公安部出入境管理局，由外交部领事司或公安部出入境管理局通知相关驻外使领馆或公安机关出入境管理部门，按各自职能为有关人员审发长期多次签证、工作签证或2至5年外国人居留许可。 （二）各省、自治区、直辖市按照本通知第一条第三、四款引进的高层次人才及其配偶和未满18周岁子女办理签证或长期居留手续，由用人单位填写登记表和名单，与相关证明材料一并报送省级人民政府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或外国专家主管部门。省级人民政府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或外国专家主管部门审核后，将名单函告所在省、自治区、直辖市外事办公室或公安机关出入境管理部门，所在省、自治区、直辖市外事办公室将名单函告外交部领事司。驻外使领馆凭外交部领事司通知、公安机关出入境管理部门凭省级人民政府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或外国专家主管部门公函按各自职能为有关人员审发长期多次签证、工作签证或2至5年外国人居留许可。 （三）列入本通知第一条第一、二、三、四款的高层次人才及其配偶和未满18周岁未婚子女，本人有意愿办理永久居留手续且符合有关条件的，由人才引进计划执行部门或地方填写登记表和名单，与有关证明文件一并报人力资源社会保障部专业技术人员管理司审核，人力资源社会保障部定期向公安部提供名单，公安部通知相关地方公安机关对名单中有关人员受理审发《外国人永久居留证》。名单中确定的外籍高层次人才仅需提供护照复印件，无需提供奖励证明、科研成果证明等证明材料和健康证明。列入本通知第一条第一、二、三款的高层次人才的外籍配偶仅需提供婚姻证明、健康证明、在国外无犯罪记录的本人书面声明及护照复印件，未满18周岁未婚外籍子女仅需提供亲属关系证明及护照复印件。列入本通知第一条第四款的高层次人才的外籍配偶仅需提供婚姻证明、健康证明、在国外无犯罪记录证明及护照复印件，未满18周岁未婚外籍子女仅需提供亲属关系证明及护照复印件。 （四）符合条件的外籍高层次人才申请办理来华定居专家证或外国专家证，由所属中央和国家机关部委、直属机构、中央企业或各省、自治区、直辖市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或外国专家主管部门将名单报送人力资源社会保障部或国家外国专家局审批同意后发证，并享受相关待遇。 四、其他事项 未进入重点引才计划的高层次人才及其家属子女办理签证和居留手续，仍按《关于海外高层次留学人才回国工作绿色通道有关入出境及居留便利问题的通知》（人社部发〔2009〕113号）等有关规定执行。 各级“千人计划”服务窗口要积极拓展服务领域，提升服务质量，为包括外籍人才在内的各类海外高层次人才提供个性化、一站式、全方位的服务，承办好各项具体服务工作。 为外籍高层次人才来华工作提供签证及居留便利是加大海外高层次人才引进力度的一项重要举措。各级组织、人力资源社会保障、外交、公安、外专部门要充分认识这项工作的重要意义，加强配合、完善服务，为全面建成小康社会和建设创新型国家提供有力人才保障。中共中央组织部 人力资源社会保障部 外交部 公安部 国家外国专家局 2012年9月28日 |